

DSU자율전공학부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이라 한다) 「학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DSU자율전공학부(이하 “이 학부” 라 한다)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학과 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(개정 2025.05.01.)

제2조(적용 범위) 본 규정은 이 학부 교수, 조교,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 적용된다.

제3조(준수의무) 무전공 학부의 구성원은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
제2장 학부 운영 조직

제4조(학부장) ① 이 학부에는 학부장 1인을 두며 별도로 특별한 임명이 없는 한 교양학과장이 담당하며, 학부장은 학부를 대표하여 학과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② 학부장은 학부의 인사, 예산편성 및 집행, 그 밖에 중요 정책 결정시 관계 부처장과 협의하여 학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한다.

제5조(전임교원) ① 이 학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임교원 둔다.

② 이 학부의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2. 학생의 학사지도·진로·생활지도 등 상담에 관한 사항
3.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
5.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6. 학생의 전공탐색 및 학과 배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학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조교) ① 이 학부의 효율적인 학과운영 지원을 위해 1인 이상의 조교를 둘수 있다.

② 조교 자격, 임무 및 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「조교임용규정」에 따른다.

제3장 교육과정

제7조(교육과정) 이 학부의 교육과정은 교양 교과목, 전공탐색 교과목, 전공 교과목,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교양 교과목 : 교양선택, 교양필수
2. 전공탐색 교과목 : 학과별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
3. 전공교과목 : 본교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교과목
4. 비교과 프로그램: 센터 및 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

제8조(전공 교육과정 편성) 이 학부의 교육과정은 대학 개설학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교육과정 개선) 교육과정 개선은 DSU자율전공학부운영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·확정한다.(개정 2025.05.01.)

제10조(세부사항)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 「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제4장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

제11조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학점은 본교 학칙시행내규에 의거 수강할 수 있다.

② 각 학과에서는 DSU자율전공학부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전공기초교과목을 지정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(개정 2025.05.01.)

③ 타 학과 수강시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,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학과 배정시 전공교과목 이수로 인정한다.

④ 학생의 수강신청은 소속 학과장이 확인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1.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 이수의 적합성 여부
2. 이수 성적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이수의 타당성 여부
3. 수강신청 교과목의 수강 가능 여부 및 학점 상하한선의 저촉 여부
4. 학생의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과의 전공 수강 지도

제12조(성적평가) 교과목의 시험은 중간시험, 학기말시험, 수시평가 등으로 구분하며, 평가방법은 교과목 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세부사항)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「학칙」, 「학칙시행내규」 및 「교무처 지침」에 따른다.

제5장 학과(전공) 배정 선택 범위 및 방법

제14조(선택 가능 학과) DSU자율전공학부 학생은 본교에 설치된 모든 전공 및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.(개정 2025.03.01., 2025.05.01)

제15조(학과배정 희망 조사) ① DSU자율전공학부 학부장은 매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이내에 각각 소속 재적생을 대상으로 학과배정 대상 학과(전공) 중에서 희망하는 학과(전공)를 조사하여 학과배정 대상 학과(전공)에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.(개정 2025.05.01.)

제16조(학과배정 정원) 매학년도 학과(전공)별 배정인원은 100% 자율 선택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.(개정2025.03.01.)

제17조(학과 선택 방법) ① 학과 및 전공 선택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이 있는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학과(전공) 배정 신청은 1학년을 이수하고 수업종료 후 7일 내에 본인 의사에 따라 학과배정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정책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과장 상담후 1학년 1학기 종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DSU자율전공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허락할 수 있다.(개정 2025.05.01.)

제18조(학과 배정 방법) ① 학과(전공) 배정시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.
(개정 2025.05.01.)

② 학과에서는 학과(전공)배정이 종료되면 교무처에 이를 이첩하고 교무처장은 확인절차를 거친후 이를 승인한다.

제19조(소속 변경) ① DSU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학과(전공)를 선택하여 배정된 후에는 배정된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.(개정 2025.05.01.)

- ②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해당 학과에서 정한 교양 및 전공 교과목 등 졸업조건을 만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DSU자율전공학부 소속으로 이수한 타 학과 전공학점은 학과 배정 결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25.05.01.)

제20조(등록금의 적용) ① DSU자율전공학부 입학시 인문·사회계열 학과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(개정 2025.05.01.)

②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변경 후에는 당해 학과의 등록금 적용을 받는다.

제21조(학위수여)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학과의 학위를 수여한다.

제6장 DSU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

제2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이 학부에는 교육과정의 편성·개선·운영 및 학과배정 등에 대한 운영과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DSU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를 설치, 운영한다. (개정 2025.05.01.)

②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23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DSU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각 학과(부)장으로 구성한다.(개정2025.03.01., 2025.05.01.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학부의 학과(부)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계열 또는 학과 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2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2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학과(부)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편성·개선·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과(부) 중요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4. 학생의 학과 선택 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7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28조(보칙) ① 본교의 제규정은 이 규정에 우선하며, 이 학부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DSU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(개정 2025.05.01.)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